성주군 담배소매인의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

○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기관 선정, 사실조사 위탁범위 등에 관한 대상 및 범위 등의 관련 기준 신설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(안 제1조)

・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“제7조제3항” → “제7조제4항”

○ 사실조사 위탁 범위 (안 제4조의2 신설)

・ 신청 영업소로부터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

・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

○ 관련기관 등 선정기준 (안 제4조의3 신설)

・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 수준

・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 처리 실적 등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: 2018.10.8. ~2018.10.29)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〔기획감사실-6159(2018.8.6.)〕
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5296(2018.8.13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변경과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객관성을 위하여 사실조사 위탁범위 및 관련기관 등의 선정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